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82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해당 자동차를”을 “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사업용 자동차”를 “운수사업용자동차”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9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제4항”을 “법 제5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항제7호”를 “제5항제7호”로 한다.

제32조 중 “9개월”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및 수출 이행 여부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등록번호(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제4조(상속인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등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